부패방지 CP 효과성평가 운영지침

제·개정 일자 : 2025. 12. 1.

제·개정 번호 : 00

2025. 12. 1. 제정

남양유업 주식회사

CP 효과성평가 운영지침

[시행 2026.1.1.] [부패방지 CP운영지침 제3호 2025.12.1.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부패방지 관련 법령 위반 예방효과 및 CP 운영결과를 점검·평가(이하 “효과성평가”라고 함)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과 권한)

부패방지 CP 책임자 및 부패방지 CP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은 부패방지 CP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취약점을 개선함으로써 부패방지 CP 운영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부패방지 CP 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과성평가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위 1호의 평가 계획 및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해야한다.
3.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효과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4. 효과성평가 결과 및 필요한 개선조치 방안을 최고경영자에 보고해야 하며, 최고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5. 효과성평가를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과성평가 계획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효과성평가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3. 효과성평가를 위해 작성되는 문서가 기록물로 보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CP 책임자의 효과성평가를 위한 설문 등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조 (평가 종류)

효과성평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평가 :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효과성평가를 말한다.

2. 외부 평가 : 객관적 평가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 등에 평가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가.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나. 외부 전문기관 의뢰

3. 기타 평가

   가. 개인 평가 (임직원 스스로 CP 준수의식 평가할 수 있도록 인사 평가지표에 반영)

   나. 모니터링 평가 (준법통제기준에 따른 준법지원실천담당자 모니터링)

   다. 부패 관련 이슈 발생 시

제4조 (평가 절차)

① 년1회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다음 연도 CP운영계획'에 효과성평가 계획을 포함한다.

② 정기 평가는 계획수립, 평가준비, 평가실시, 결과검토 순으로 책임자가 추진한다.

   1. 계획 수립

      평가방법 · 평가자 등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평가 진행계획을 수립한다.

   2. 평가 준비

가. 평가내용은 다음 표의 측정지표를 사용한다.

<표1. 측정지표>

구 분	측정 지표
CP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내용	-. 부패방지 CP 운영체계 전 과정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수준 -. 부패방지 CP에 대한 내부 인식도, 참여도 -. 부패방지 CP 위반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가 회사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부패방지 CP 관련 교육성과 -. 내부제보 시스템의 운영 성과 -. 부패방지 CP 규정 및 지침 등 CP 운영 관련 기준의 적절성
CP가 대내외 환경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내용	-. 부패방지 CP 운영이 기업의 핵심 경영 가치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 부패방지 CP 운영을 위해 구축된 조직 및 시스템 구성의 적절성 여부 -. 부패방지 CP 관련 인력과 예산 배분의 적절성 여부
기타	-. 타 조직사례, 감사사례 등 다양한 부패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나. 평가에 필요한 설문지 및 점검표를 작성한다.

3. 평가 실시

가. 설문 조사방식 (임직원,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부패방지 CP 효과성 측정)

나. 점검표 점검방식 (전담조직의 부패방지 CP 프로그램 운영실적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ISO 인증기관의 평가 지표)

4. 결과 검토 : 결과를 검토하고 부패방지 CP운영 취약점을 식별한다.

② 외부 평가는 해당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③ 개인 평가는 인사평가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거쳐 시행 및 운영한다.

제5조 (개선방안 검토 및 결과 보고)

① 부패방지 CP 책임자는 효과성평가가 끝나면 평가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 임직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② 부패방지 CP 책임자는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을 독립적으로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제6조 (개선 추진)

부패방지 CP 책임자는 최고경영자의 통지를 바탕으로 필요사항의 개선을 추진한다.

제7조 (기록 및 공개)

부패방지 CP 책임자는 효과성평가를 기록물로 보관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6. 1. 1.부터 시행한다.